

취업승인 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신청인 인적 사항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소속 | 연락처 | 자택 |
| | 직위 | | 휴대전화 |
| | 직급 등 | | 전자우편주소 |
| | 퇴직일자 | 주소 | |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취업예정사실 | 취업예정기관 명칭 | 취업예정일 |
| | 기관의 규모(역원) -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: | - 연간 외형거래액: |

| | |
|------|---|
| 취업경위 | 취업예정직위 |
| | 취업 후 담당업무 |
| | 취업 후 활동계획 |
| | *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|
| | 취업동기 및 경로 *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취업승인 신청사유 (간략히 기재) 및 근거 | 근거 *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2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|
| | 사유 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| | |
|------|---|
| 첨부서류 | 1. 별지 제19호서식(취업 예정 확인서) 2. 별지 제23호서식(업무취급 승인신청서)(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) |
|------|---|

작성방법

1. 소속·직위·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,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·직위·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2.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
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1호(영리사기업체)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(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)은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(사회복지법인 등)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.
3.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
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(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사감사, 조세부과, 계약, 감독, 사건수사 등)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(업무취급 승인신청서)을 작성하여 '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'와 함께 제출하십시오.